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건설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7796호, 2005.12.29)
동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7817호, 2005.12.3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7982호, 2006.9.2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대통령령 제19846호, 2007.1.24)
동법 시행규칙 제2조(행정자치부령 제368호, 2007.1.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에서 건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일반건설업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는 의무하도급제도가 적용된다. 그러한 의무하도급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것이다.

분 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7545호, 2005.5.31)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내지 제63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대여·정비·수리·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 야 운송서비스 - 자동차 정비 · 수리 · 판매 · 폐기 및 검사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교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8254호,
2007.1.19)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건설
교통부령 제551호, 2007.3.1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자동차관리서비스(중고차판매 · 정비 · 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고, 경우에 맞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 교부 및 봉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유통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8365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18445호, 2004.6.29)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7.5) 주세법 제8조 내지 제10조(법률 제7841호, 2005.12.31) 동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19336호, 2006.2.9) 국세청 고시 제2005-5호 및 제2005-8호(2005.1.21)
-----	---

유보내용

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류 도매 유통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분 야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1(산업자원부 제2007-69호, 2007.2.28)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2) 육우사육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분야 사업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7148호, 2004.1.29)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10.1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약사법 제34조 및 제37조(법률 제8035호, 2006.10.4)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7조 및 제9조(대통령령 제18401호, 2004.5.25)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제4조 및 제13조(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9호, 2006.9.5) 의료기기법 제14조(법률 제8037호, 2006.10.4)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06.7.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8033호, 2006.10.4)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보건복지부령 제300호, 2004.12.10) 식품위생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법률 제8005호, 2006.9.27) 동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1조(대통령령 제18978호, 2005.7.27)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0조(별표9)(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7.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7098호, 2004.1.20)
-----	--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 나. 의료기기, 또는
 -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 나. 식품공급 서비스

- 다.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 야 의약품 소매유통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약사법 제16조 및 제19조(법률 제8035호, 2006.10.4)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의약품 소매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약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인은 약국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로 설립 할 수 없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법률 제7303호, 2004.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7052호, 2003.12.31) 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8251호, 2007.1.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8135호, 2006.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8257호, 2007.1.19)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u>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
여객운송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법률 제8095호, 2006.12.26)
 동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19715호, 2006.10.26)
 동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삭도·궤도법 제4조(법률 제7714호, 2005.12.7)
 동법 시행규칙 제3조(건설교통부령 제520호, 2006.6.14)

유보내용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 당해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운송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운송 보조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8381호, 2007.4.11)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 제29조 및 제30조(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6.26)

도선법 제6조(법률 제8379호, 2007.4.11)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8223호, 2007.1.3)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서비스와 해운중개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도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만이 해상도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및 제132조 (법률 제8128호, 2006.12.28) 동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278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 (건설교통부령 제532호, 2006.8.18)

유보내용	<u>투자</u>
	<p>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나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외국 국민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라. 가호 내지 다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항공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가호 내지 마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운송서비스 - 특수항공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8128호, 2006.12.28) 동법 시행규칙 제298조 및 제299조의2(건설교통부령 제532호, 2006.8.18)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항공기 사용서비스 또는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벌채 그리고 항공 관광과 같은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라. 가호 내지 다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 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이며 항공화재진압·산림화재관리·항공광고·비행훈련·항공지도제작·항공조사·항공살포·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 그리고 항공순찰 및 관측을 포함한다.

분 야 운송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법률 제8095호, 2006.12.26)

동법 시행규칙 제66조(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3.19)

주차장법 제12조(법률 제7596호, 2005.7.13)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7969호, 2006.7.1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주차장서비스, 버스터미널 운영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 당해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경우에 맞게, 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 야 쿠리어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8128호, 2006.12.28)

동법 시행규칙 제306조(건설교통부령 제532호, 2006.8.1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1조(법률 제8138호, 2006.12.30)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서비스를 포함한 국제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운송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ку리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ку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는 인은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19조 및 제59조의2 (법률 제8324호, 2007.3.29)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8.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7815호, 2005.12.30)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보유되지 아니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한다. 이에 더하여, KT에 있어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다음을 허용한다.

가. 의제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까지 보유하는 것. 다만, KT와 SK텔레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나. 의제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최대 100분의 100까지 보유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으로 공중통신서비스를 국경간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법률 제8324호, 2007.3.29)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법률 제8324호, 2007.3.29)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라 함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아니하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7810호, 2005.12.30)의 규정에 따라, 전송설비라 함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 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률 제8120호, 2006.12.28) 동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동법 시행규칙 제4조(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7707호, 2005.12.7)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건설교통부령 제425호, 2005.2.12)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u>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리스·임대 그리고 수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제16조(법률 제8037호, 2006.10.4)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보건복지부령 제366호, 2006.7.2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리스·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제30조(법률 제8095호, 2006.12.26)
동법 시행규칙 제52조(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8.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과학조사서비스와 해도제작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5809호, 1999.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4986호, 1995.12.6)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지배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p>시장접근(제12.4조)</p> <p>현지주재(제12.5조)</p>
조치	<p>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8271호, 2007.1.26)</p> <p>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법률 제7895호, 2006.3.24)</p> <p>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7428호, 2005.3.31)</p>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u>
	<p>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p> <p>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p> <p>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p> <p>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외국법자문사 분야에서 준수되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p>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노무 자문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3 및 제7조의4(법률 제7796호, 2005.12.2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인노무사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변리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7870호, 2006.3.3)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변리사 서비스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공급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변리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및 제23조(법률 제7796호, 2005.12.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7524호, 2005.5.31)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만이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7878호, 2006.3.24)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만이 세무조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서비스 - 외국세무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분 야 전문직 서비스 - 통관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및 제9조(법률 제7796호, 2005.12.2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사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의하여 통관업 허가를 받은 통관취급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7920호, 2006.3.24)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대통령령 제19804호, 2006.12.29)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36조의8(노동부령 제265호, 2007.1.12)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 야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 서비스 -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 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7593호, 2005.7.13)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교통부령 제458호, 2005.7.1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법률 제7428호, 2005.3.31)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8268호, 2007.1.2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7923호, 2006.3.24) 동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19716호, 2006.10.26)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제28조(법률 제7305호, 2004.12.31)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4조(대통령령 제19805호, 2006.12.29) 동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교통부령 제545호, 2006.12.29)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법률 제7573호, 2005.5.31) 측량법 제39조(법률 제8071호, 2006.12.20)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대통령령 제19849호, 2007.1.24)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8038호, 2006.10.4) 온천법 제7조(법률 제8343호, 2007.4.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7982호, 2006.9.22)

유보내용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또는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자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전광판방송서비스 및 옥외광고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8301호, 2007.1.26)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법률 제7246호, 2004.12.23)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41조(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전광판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3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여야 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 직업알선서비스, 근로자 공급 및 근로자 파견서비스 및 선원교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8249호, 2007.1.19)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19602호, 2006.6.30)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36조(노동부령 제252호, 2006.6.30)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법률 제8076호, 2006.12.21) 동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15828호, 1998.7.1) 동법 시행규칙 제3조(노동부령 제255호, 2006.7.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법률 제8283호, 2007.1.26) 선원법 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 제122조의2 및 제122조의3(법률 제8381호, 2007.4.1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6457호, 2001.3.28)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유료직업소개서비스, 근로자 공급서비스 또는 근로자 파견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투명성 목적상, 2007년 3월 31일 현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26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인은 대한민국 상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분 야 조사 및 경비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7671호, 2005.8.4)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동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9.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비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대한민국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경비서비스만이 협용된다.

- 가. 시설경비
- 나. 호송경비
- 다. 신변보호
- 라. 기계경비, 그리고
- 마. 특수경비

분 야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조치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12조(법률 제7941호, 2006.4.28)
동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19963호, 2007.3.27)
동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관광부령 제149호, 2006.10.27)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종류의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
자 하는 인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가.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또는
- 나. 소설 · 만화 · 사진집 · 화보집 및 잡지

국내간행물 배포자는 배포 후에 필요시 사후 심의의 대상이
된다.

분 야 운송 서비스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항공법 제137조 및 제138조(법률 제8128호, 2006.12.28)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건설교통부령 제
532호, 2006.8.18)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교육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8240호, 2007.1.19) 동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19842호, 2007.1.24)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7802호, 2005.12.29) 동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19546호, 2006.6.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19360호, 2006.2.28)

유보내용

사립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까지 외국 국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기본재산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서 II에 기술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의료인·약사·수의사·한약사·의료기사, 유아·초등·중등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및 수도권에 위치

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은 대한민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설립할 수 있다.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앙정부만이 설립 할 수 있다.

분야	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조치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및 제13조(법률 제7974호, 2006.9.22) 동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19717호, 2006.10.27)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법률 제6400호, 2001.1.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2(산업자원부 제2007-69호, 2007.2.28)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교육기관의 유형은 다음에 한정된다. 가.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 그리고 나.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1)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교 육시설 2) 지식 · 인력 개발 사업 관련 교육시설, 그리고 3) 온라인 평생교육시설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성인대상 학원이라 함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 국민은 학사학위 이 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여야 한 다.

분야	교육서비스 -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8294호, 2007.1.26)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18911호, 2005.6.30)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노동부령 제255호, 2006.7.19)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u>

직업능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수의사법 제17조(법률 제7546호, 2005.5.31)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법률 제8377호, 2007.4.11)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수의 서비스 또는 수산질병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분야	환경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 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 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법률 제7459호, 2005.3.3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법률 제7820호, 2005.12.3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7459호, 2005.3.31)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7924호, 2006.3.24)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법률 제7459호, 2005.3.31)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법률 제7573호, 2005.5.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법률 제7849호, 2006.2.21) 폐기물관리법 제26조(법률 제7459호, 2005.3.31) 동법 시행령 제6조(대통령령 제18471호, 2004.7.13)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분야란에 기재된 환경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분야 공연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2.2조)

조 치 공연법 제6조 및 제7조(법률 제7991호, 2006.9.27)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19798호, 2006.12.29)
 동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관광부령 제154호, 2006.12.29)
 법무부령 제609호, 2007.3.5, 별표5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민국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p>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p>
조치	<p>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7655호, 2005.8.4) 동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전파법 제20조(법률 제7815호, 2005.12.30)</p>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p>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 국의 혜가를 받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 의 계약 체결을 통한 방법으로만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뉴스통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 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 또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의 대한민국 내 설립은 기
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대한민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
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분 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8조)

조치 약사법 제34조(법률 제8035호, 2006.10.4)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보건복지부령 제372호, 2006.10.24)

유보내용 투자

혈액제제 제조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원료혈액 물질을 조달하여야 한다.

분야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의무	<p>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p>
조치	<p>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6조 (법률 제7655호, 2005.8.4)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p>
유보내용	<u>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u>
	<p>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그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p>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대한민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협정 발효일로부터 그러한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원어로 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p>

분 야 유통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시장접근(제12.4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7433호, 2005.3.31)

축산법 제24조 및 제27조(법률 제6821호, 2002.12.26)

종자산업법 제142조(법률 제7678호, 2005.8.4.)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7428호, 2005.3.31)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7275호, 2004.12.3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1(산업자원부 제2007-69호, 2007.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7311호, 2004.12.3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4조 및 제20조의2(농림부고시 제2006-76호 2006.12.30)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2.2조 및 제12.4조는 대한민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분 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48조,
그리고 제69조 내지 제71조(법률 제8301호, 2007.1.26)
동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법률 제6970호, 2003.8.21)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방송위원회 고시
제2005-2호, 2005.1.2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방송위원회 고시 제2006-1호,
2006.3.2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전송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국 정부·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의 인에 대해서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하여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의제외국인에 대하여 종합편성·보도 또는 홈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한다.

투명성 목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방송법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 포함)은 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주식회사(MBC))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전체 편성물 중 일정 비율 만큼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하여야 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그리고
-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음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간 전체 편성물 중 일정 비율만큼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하여야 한다.

- 가.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45
- 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5, 그리고
- 다. 음악: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최소한 약간의 음악 프로그램이라도 편성하는 경우, 채널별로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만큼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하여야 한다.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업자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채널별로 적용되는 연간 분야별 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을 다음의 비율 보다 더 큰 비율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그리고

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별도의 콘텐츠 쿼터 요건이 적용된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콘텐츠 쿼터 요건이 적용된다.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100분의 80 또는 그 이상이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라 함은 보도 · 오락 · 드라마 · 영화 · 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분야 에너지산업 -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¹⁾

조 치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8315호, 2007.3.29)
 동법 시행령 제87조의2(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8380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외국인투자통합공고 부록 1(산업자원부 제2007-69호, 2007.2.28)
 재정경제부 고시(제2000-17호, 2000.9.28)
 증권업 감독규정 제7-6조(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호,
 2007.1.19)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 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대한민국 영역내 전체 발전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 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부속서 II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제1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에너지 산업 - 가스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²⁾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8050호, 2006.10.4)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8315호, 2007.3.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8380호, 2007.4.1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07.3.26)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부속서 II의 여덟 번째 유보항목 제1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

관련의무 이행요건(제11.8조)

시장접근(제12.4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8280호, 2007.1.26)

동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19714호, 2006.10.26)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